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8.10.12(금)10:00

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문석

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이상정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8년 10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18년 10월 4일

3. 제안 이유

- 생산적 일손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대하고 유공자 포상 등의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추진된 사업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사업의 적정추진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지원 대상을 도내 한정 및 참여 대상 확대(안 제2조)

- 충청북도 소재 농가 및 중소기업으로 수정
-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의 정의시 도민 한정 내용 삭제

나. 생산적 일손봉사의 범위 한정(안 제3조)

- 1일 4시간 자발적 참여 일손봉사

다. 농가 및 중소기업의 실비 지급규정 삭제(안 제5조, 제6조)

라. 실비지급 관련 강행규정의 완화(안 제7조)

- '지급하여야 한다' → '지급 할 수 있다'로 개정

마. 생산적 일손봉사 진흥 규정 신설(안 제8조의 2)

- 도지사의 행.재정적 지원 및 참여자 포상 규정 신설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생산적 일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 생산적 일손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대하고 유공자 포상 등의 규정을 마련함은 물론 추진된 사업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사업의 적정추진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